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5
----------	------

발의연월일 : 2024. 11. 27.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전홍배 의원, 박주용 의원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등 결혼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결혼장려 지원사업) ① 군수는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3.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 인식개선 관련 캠페인 등 홍보
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2024.1.23. 일부개정, 2024.4.24. 시행)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조례)」(2021.12.30. 일부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

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